DCU DAEGU CATHOLIC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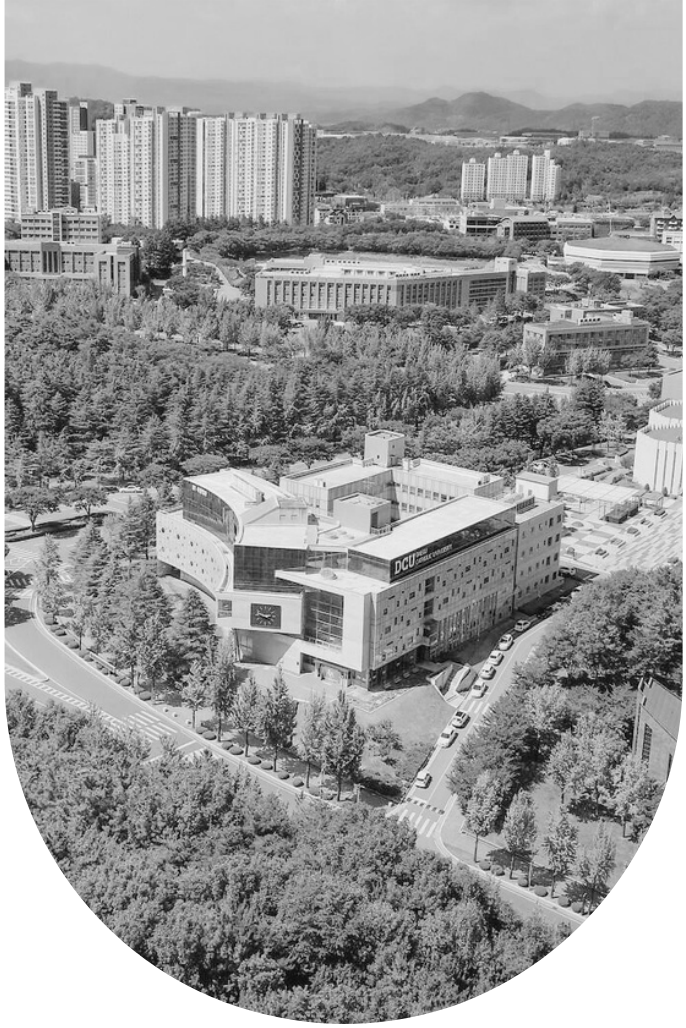

2026학년도

대학안전관리 계획

DCU LAB SAFETY

safety@cu.ac.kr | +053-850-3883

목 차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1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2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6

1. 재난 ····· 6

[1] 자연재난 ····· 6

[2] 사회재난 ····· 13

2. 안전사고 ····· 15

[1] 대학 안전사고 ····· 15

[2] 교육시설 안전사고 ····· 24

[3] 연구실사고 ····· 27

3. 감염병 확산 ····· 30

[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30

4. 범죄 ····· 34

[1] 일반범죄 ····· 34

[2] 성범죄 ····· 39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43

[1] 산업재해 ····· 43

[2] 중대재해 ····· 49

6. 기타 ····· 55

[1] 비상사태(전시, 침투 · 도발 등) ····· 55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 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 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 화	053-850-3883	FAX	053-359-6245	홈페이지	www.cu.ac.kr
총장	성한기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성한기 (직책 : 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10,871	602	363	72	11,908

교직원 (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현업업무직원	기타	합계
	567	785	398	42	-	1,792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 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 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 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담당 부서 현황 및 비상 연락망 작성**(아래 예시 서식 및 참고자료 참조)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안전팀	관련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캠퍼스관리팀	총무행정팀 건축안전팀
	사회재난	건축안전팀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팀	건축안전팀 캠퍼스관리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구실 사고	건축안전팀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교육시설안전	건축안전팀	캠퍼스관리팀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진료소	총무행정팀 학생지원팀 기숙사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총무행정팀 학생지원팀 학생상담센터
	일반범죄	총무행정팀	학생지원팀 학생상담센터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축안전팀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정보보호팀 기숙사
	중대재해처벌법	건축안전팀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정보보호팀 기숙사
6. 기타	비상사태	총무행정팀	예비군연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총장실	총장	성한기	053-850-3235
부총장	부총장	이경수	053-660-5100
부총장	부총장	신홍식	-
부총장	부총장	김용찬	053-850-3011
교목처	처장	오상직	053-850-3271
교무처	처장	김경환	053-850-3003
교육혁신원	원장	김용민	053-850-2522
학생처	처장	박영아	053-850-3004
진로취업처	처장	김기성	053-850-3999
사무처	처장	황성재	053-850-3005
기획처	처장	김용찬	053-850-3011
산학협력단	단장	윤협상	053-850-3428
입학처	처장	박승원	053-850-3176
국제처	처장	윤종인	053-850-3007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직원인사팀	팀장	손석민	053-850-3551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전산정보팀	팀장	박상수	053-850-2621
인권센터	센터장	손옥선	053-850-3238
보건진료소	팀장	유명숙	053-850-3188

재난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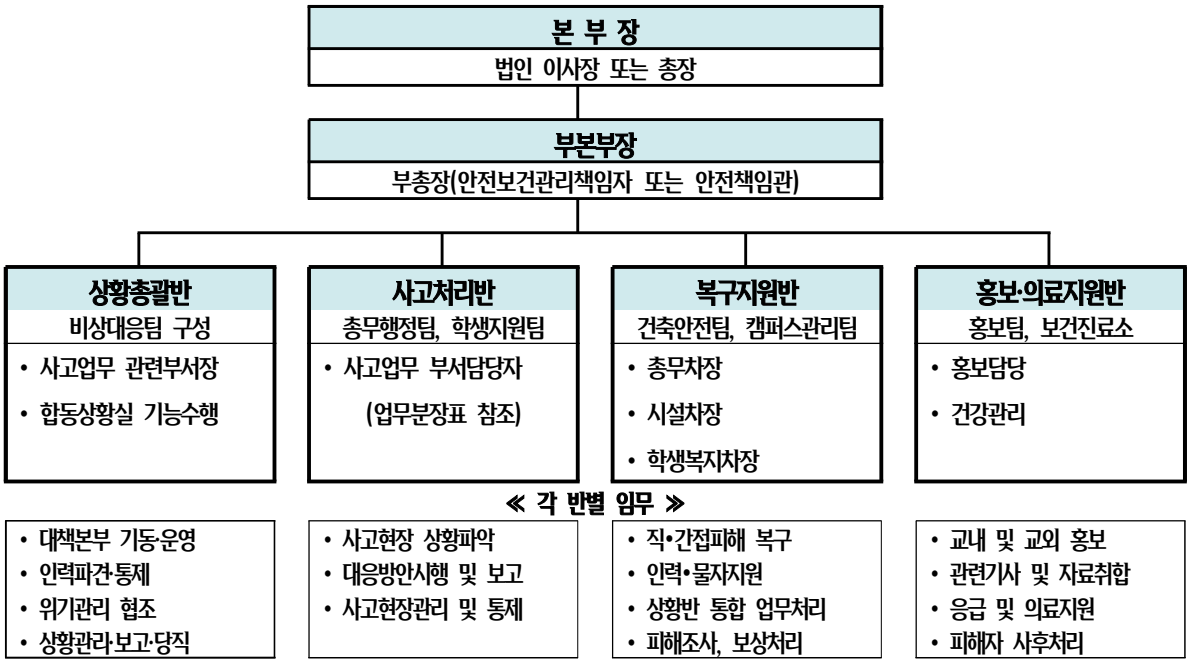

비상연락망 구축사례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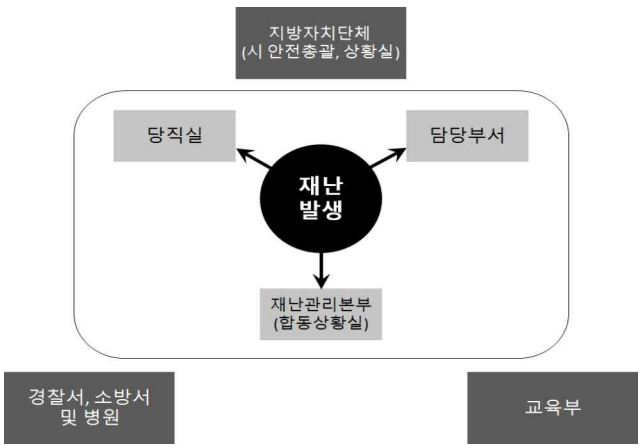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당직실	재난관리본부
각 재난별 담당부서	야간대응	사태 악화 시 운영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각 재난별 담당부서	주야대응	주야대응
경찰서, 소방서 및 병원	**시 안전총괄과**	**시 상황실**
Tel.053-770-0329	Tel.053-810-5150	Tel.053-811-2231

Ⅱ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주관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	0	0	0	0	0.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원인분석

○ **태풍으로 인한 수목 전도(1그루) 발생**

- 2021년도 태풍으로 인한 느티나무 1그루 전도(인명피해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작성예 : 예방교육 >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온라인교육)
- (실시) 여름철, 겨울철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부, 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평가·시험 실시(온라인교육) 및 우수학부(학과) 포상 실시 등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용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4~제33조의3) 관련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시설물유지보수사업	20	20	20	60	
계	**20**	**20**	**20**	**6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실내 공기질 관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기준치 초과 호실의 경우 별도 조치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건물유지보수사업	300	300	720	1,320	
계	**300**	**300**	**720**	**1,320**	

2. 안전사고

1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이한진	053-850-3962, wicked@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강영미	053-850-3501, ymkang@cu.ac.kr	
팀장	외국인학생지원센터	팀장	함종명	053-859-4221, achilles@cu.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24	31	36	43	39	34.60
재산피해(백만원)		0	1	7	1	0	1.8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0
	부상	2	6	31	42	39	24.00
	계	**2**	**6**	**31**	**42**	**39**	**24.00**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 · 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 · 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 · 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2025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요인2.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된 행위의 심각성·피해규모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 음	사 소	경 미	중 간	중 대	극 심
극 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 계	경 계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경 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 소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 심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없 음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근무시간 내

대학안전사고 [근무시간 내]
관
리
지
침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
교내 응급처치 가능 환자
병원치료 필요 환자
응급환자
1 상황파악 전파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보건진료소 850-3119]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보건진료소 850-3119] [학생지원팀 850-3962 / 외국인학생지원팀 859-4223]
최초 발견자 즉시 119 신고 및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학생지원팀 850-3962 / 외국인학생지원팀 859-4223]
2 응급조치
교내 응급처치 시행 [보건진료소 850-3119]
교내 응급처치 [보건진료소 850-3119] 병원이동 및 이송 [학생지원팀 850-3962 / 외국인학생지원팀 859-4223]
응급처치 시행 [보건진료소 850-3119] 병원이동 및 이송 [119]
3 상황정리
주의사항 안내(학생) [보건진료소 850-3119]
치료경과 파악 [학생지원팀 850-3962] [외국인학생지원팀 859-4223]
치료경과 파악 [학생지원팀 850-3962] [외국인학생지원팀 859-4223]
4 보고조치
총장 보고 (필요 시) [학생지원팀]
보험사 또는 공제회 통지 (필요 시 총장 및 교육부 보고) [학생지원팀]
보험사 또는 공제회 통지 (총장 및 교육부 보고) [학생지원팀]
※ 교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 관리부서에서 담당

근무시간 외

대학 안전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 현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학생지원팀	053-850-3961~2	주관부서
외국인학생지원팀	053-850-4221-3	
건축안전팀	053-850-3881	협조부서
캠퍼스관리팀	053-850-3691	
보건진료소	053-850-3188, 3119	
현장실습지원센터	053-850-3501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관리팀	팀원	황재홍	053-850-3693, jaehong@cu.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사고 사례)

구 분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계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2026학년도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별 추진 계획

3대 전략목표	구분	세부과제	'26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안전한 교육시설	1-1	사전 예방적 교육시설 안전관리	· 안전인증제 추진(인증기한 '25.12.3.) ·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 실시
	1-2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 강화	· 정기 안전점검 및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교육시설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점검실시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추진 · 교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연 2회)
	1-3	화재 및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소방시설 점검 · 석면제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점검
2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2-1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노후시설 개선
	2-2	교육시설 녹색건축 성능 강화(공공부문)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강화
	2-3	대학 실험·실습실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실험실 안전 환경 기반 조성 · 교육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3 효율적인 시설관리	3-1	안전점검의 날 점검 온라인 운영	· 효율적인 건물 점검 및 관리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교육시설안전인증	63	80	-	143	인증 완료
교내 각관 방수 공사	40	50	110	200	
무석면캠퍼스조성사업	71	80	91	242	
계	**174**	**210**	**201**	**585**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팀원	캠퍼스관리팀	팀원	황재홍	053-850-3693, jaehong@cu.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 · 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계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찾아가는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내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한 실험 수행 방법을 습득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구실 안전교육 홍보 및 단과 대학별 교육을 통한 교내 안전 문화 유도

○ **(연구실 정기점검)** 연구실 내 물리, 화학, 기능적 결함 등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개선

○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연구실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기존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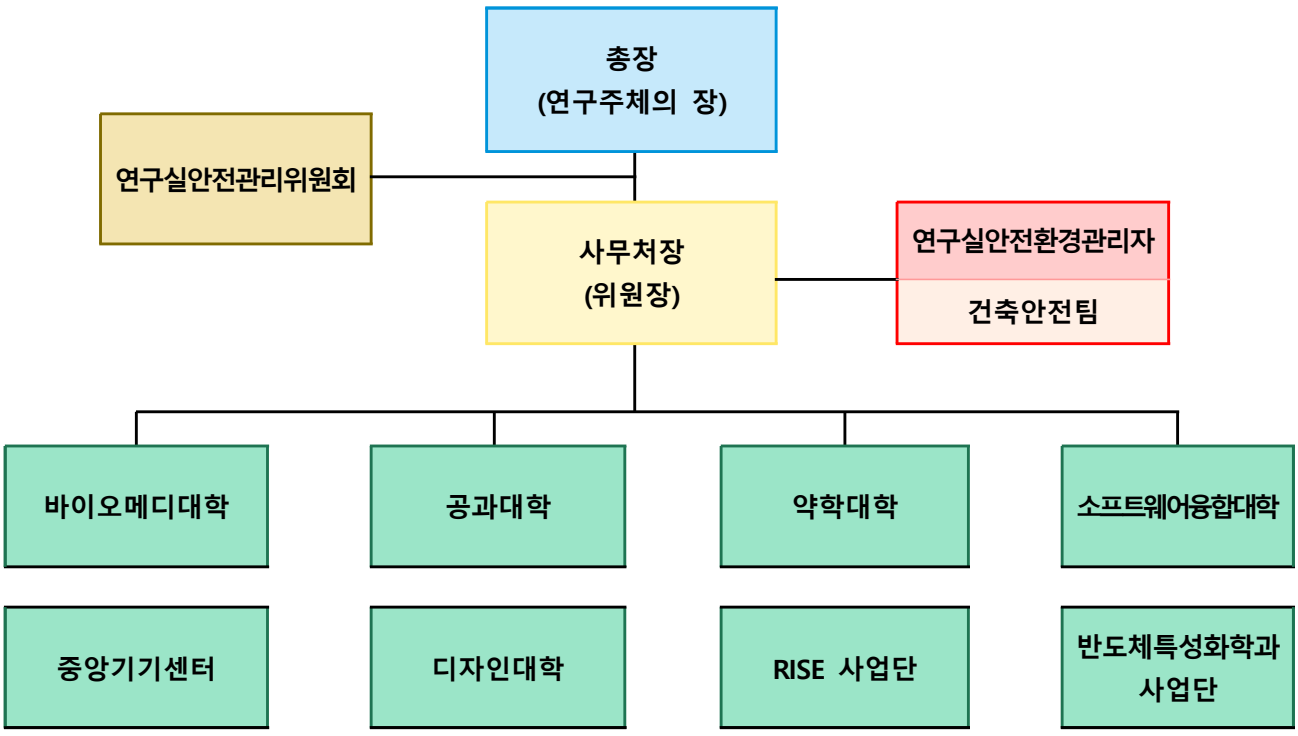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안전관리사업	65	75	75	215	
계	**65**	**75**	**75**	**215**	

□ 연구실 사고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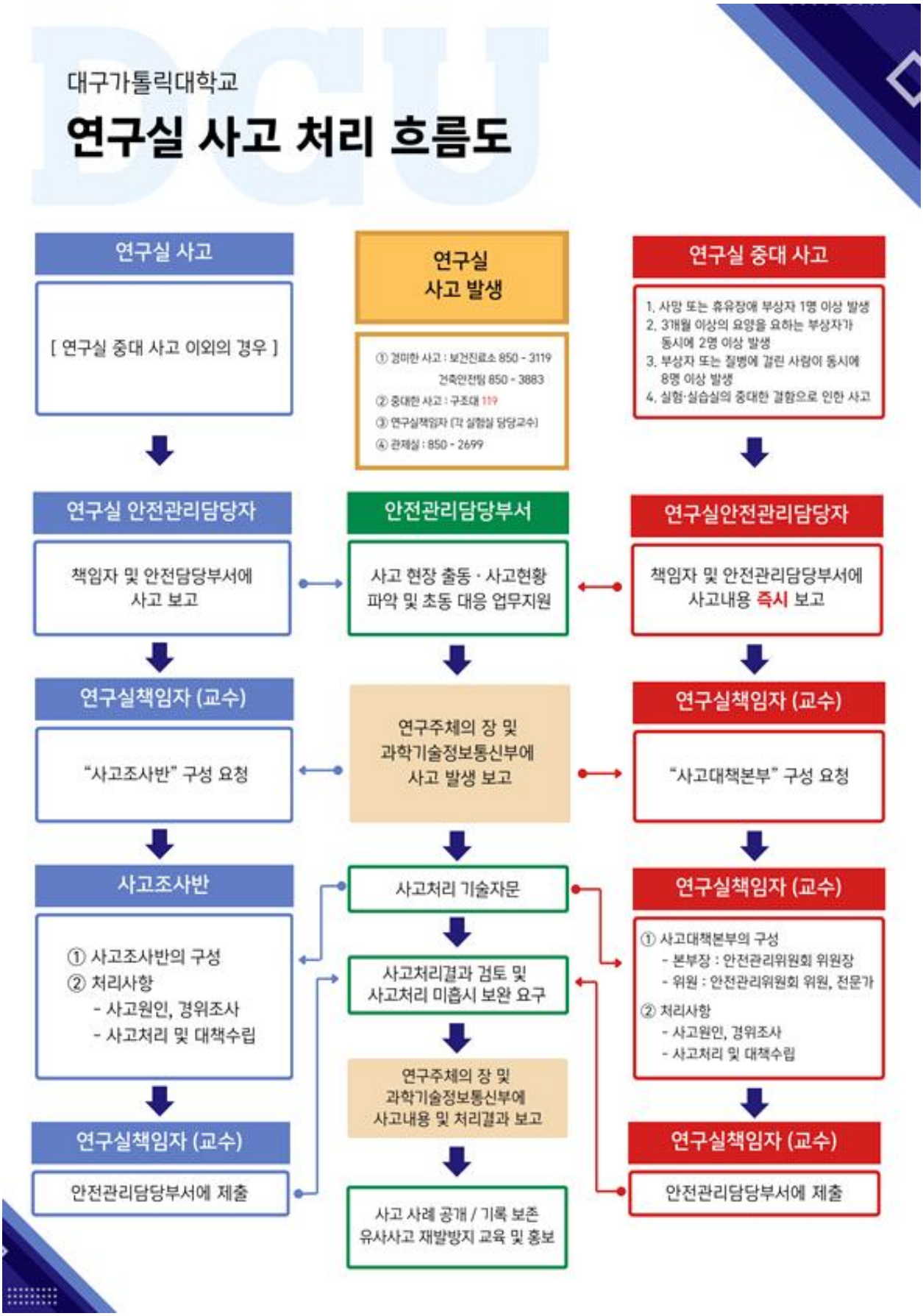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실 사고 처리 흐름도
연구실 사고
[연구실 중대 사고 이외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책임자 및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보고
연구실책임자 (교수)
"사고조사반" 구성 요청
사고조사반
① 사고조사반의 구성
② 처리사항
- 사고원인, 경위조사
- 사고처리 및 대책수립
연구실책임자 (교수)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
연구실 사고 발생
① 경미한 사고 : 보건진료소 850 - 3119
건축안전팀 850 - 3883
② 중대한 사고 : 구조대 119
③ 연구실책임자 (각 실험실 담당교수)
④ 관제실 : 850 - 2699
안전관리담당부서
사고 현장 출동 · 사고현황 파악 및 초동 대응 업무지원
연구주체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 발생 보고
사고처리 기술자문
사고처리결과 검토 및 사고처리 미흡시 보완 요구
연구주체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사고 사례 공개 / 기록 보존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육 및 홍보
연구실 중대 사고
1. 사망 또는 휴유장애 부상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8명 이상 발생
4. 실험·실습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사고내용 즉시 보고
연구실책임자 (교수)
"사고대책본부" 구성 요청
연구실책임자 (교수)
①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 본부장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위원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가
② 처리사항
- 사고원인, 경위조사
- 사고처리 및 대책수립
연구실책임자 (교수)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

3. 감염병 확산

1 감염병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보건진료소	유명숙	053-850-3188, sryoo7@cu.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진료소	정은진	053-850-3119, jungej@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팀장	외국인학생지원팀	함종명	053-859-4221, achilles@cu.ac.kr	
팀장	기숙사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 위험요인

○ **(코로나-19)**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조정(2급→4급)하고, 방역체제를 완화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완화하여 대응함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감염자 수	20	952	0	0	0	194.4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 원인분석

○ 4급 전환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감소 추세였으나 동절기 유행 시기를 맞아 급성호흡기감염병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행동수칙 교육 및 관리 강화 필요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질병관리청의 감염병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마스크 착용, 학생 건강 상태 체크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마스크 종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인정 대상 등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를 따름
- 교육 활동 중 학생 건강 상태 체크

· 발열 또는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건진료소로 이동

○ 대학 내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

- 대학 내 손씻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 공공시설 소독 및 청소 등 위생 관리 강화 및 주기적 환기시킴

○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 실외 쪽 및 복도 쪽 창문을 함께 열어서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가동시 자주 환기(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 학교 내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
- 학교 내 공용 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보건진료소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 체계 구축

○ 관련 증상 발현시 대응

등교 전	등교(출근)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실시
등교 후	·37.5도 이상의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진료소에 비치 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시행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대응**

·제4급 감염병인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

·등교가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출석인정이 필요한 모든 일자에 해당 일자별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합니다.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밀폐된 실내에서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세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을 신속하게 방문해 주세요.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비축 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소모품 구입)	2.1	0.3	0.5	2.9	
계	**2.1**	**0.3**	**0.5**	**2.9**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김태연	053-850-3556, lailail718@c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이한진	053-850-3962, wicked@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대학에서의 근본적인 요인)** 부정적인 관계, 대학생활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대학의 사회적 지원의 결핍, 지역의 범죄와 폭력적 환경, 부모의 통제부족으로 인한 범죄

- 대학 내의 과도한 경쟁, 소외되고 외톨이 상태의 심화와 방치되고 있는 현실

- 저출산에 따른 입시제도의 편에 따른 폭력 증가 가능성
- 학교 구성원 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없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인권센터	행정직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장해준	053-850-2577, deepocean@cu.ac.kr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박수영	053-850-2576, dlsrnjs@cu.ac.kr	
팀장	교무인사팀	팀장	성봉헌	053-850-3012, seongbh@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팀장	직원인사팀	팀장	손석민	053-850-3551, smson@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수석상담원	권정해	053-850-3358, jayu0602@cu.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 범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	3	-	-	0.6
	성폭력	1	1	-	1	-	0.6
	계	1	1	3	1	-	1.2
피해자 수	성희롱	-	-	3	-	-	0.6
	성폭력	1	4	-	2	-	1.4
	계	1	4	3	2	-	2

* 발생건 수 : 징계 처리 된 건에 한하여 작성

□ 원인분석

○ 본교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사건 접수 경향 분석 결과

-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적은 편이나 발생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신고자와 피신고인의 관계가 다양함. 따라서 다양한 권력구조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성범죄를 예방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교내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 우리 대학 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내 홈페이지, 인권센터 웹사이트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 더불어, 신입생 및 전 학교 구성원의 인권센터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학기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리플렛을 배부함. 매년 학교 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위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대응) 성고충상담원의 전문 교육 및 심화 교육을 지원하여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신고 후 피해자 및 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함. 또한,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서 외부 위원을 위촉함.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 경산경찰서, 대구 인권사무소 등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최우선으로 조력함.

○ (재발방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사건관리시스템에 제출함. 또한, 대학 내 규정 및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함.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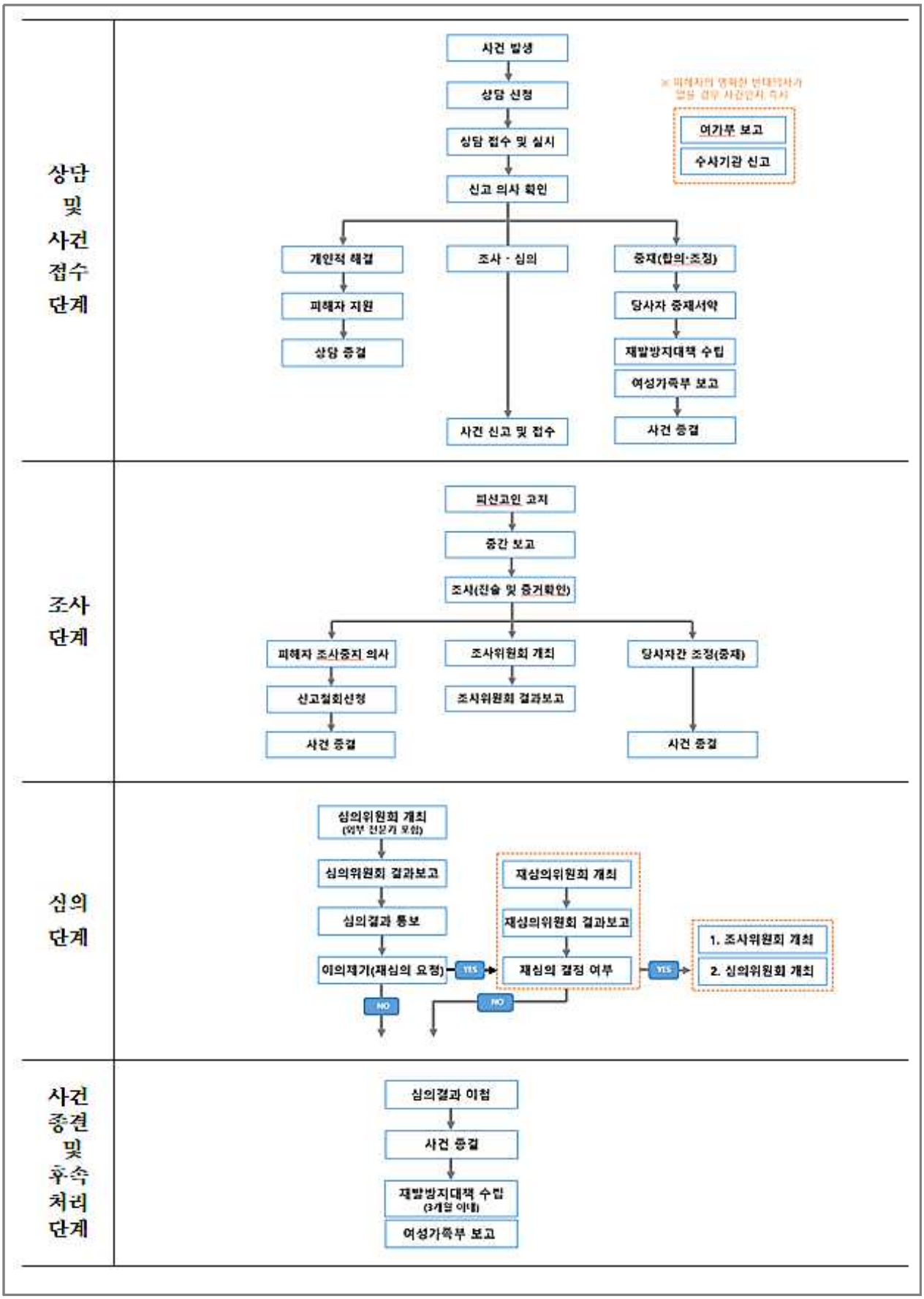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예방교육 프로그램	5	5	4.67	14.67	
전문가 자문 및 활용	0.5	1	1	2.5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0.6	1.45	1.45	3.5	
계	**6.1**	**7.45**	**7.45**	**19.2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등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대신학원	팀장	송두진	053-660-5110, songd@c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계	-	-	-	-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5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이행사항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6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 총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지식 습득 및 대응 역량 향상을 통한 인적 불안전 요인 제거
- 안전보건교육 교육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건축안전팀 주관)
- 현업종사자 집체 교육 : 2026년 06월, 12월 시행 예정
- 관리감독자 교육 : 2026년 06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집체교육)
- 자체 교육 영상 제작 : <u>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u>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을 통한 현업종사자의 질병, 질환 예방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	서류보존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현황 파악 및 MSDS 부착 및 교육
- 건축안전팀 주관 계측장비 사용을 통한 <u>공기질 측정 실시 후 결과 보고서 공유</u>

○ **유해·위험 방지 활동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① 사전 설문 조사 : 위험성 평가 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근로자 의견 청취

② 위험성 평가 실시 :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작업 간 유해·위험 요인 확인 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③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 관리감독자 간담회, 현업종사자 집체 교육을 통한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2회)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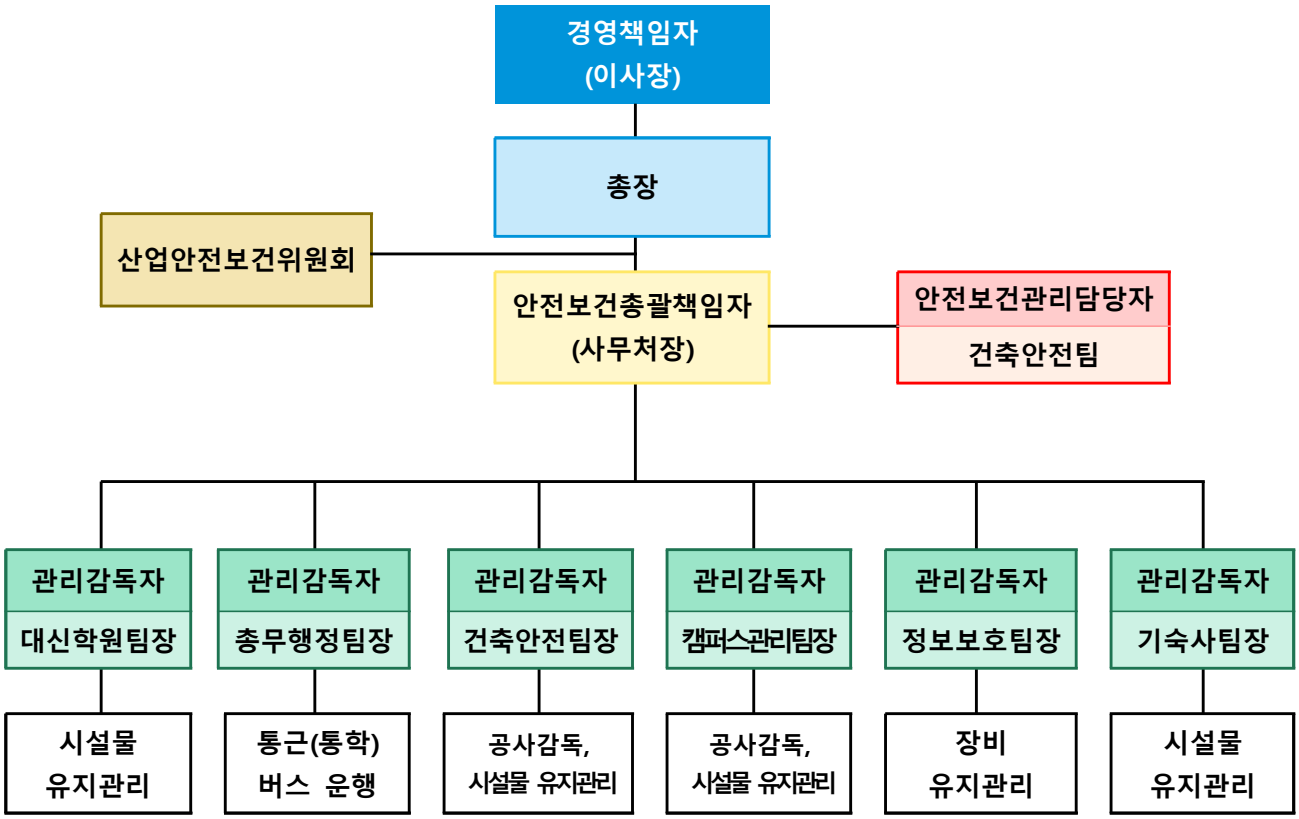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안전관리사업	65	75	75	215	
계	65	75	75	215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대신학원	팀장	송두진	053-660-5110, songd@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부상	-	-	-	-
	계	-	-	-	-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작업장별, 직종별(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 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 ·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 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 기준 (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우리 대학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게시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

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우리 대학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이행 실시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안전관리사업	65	75	75	215	
계	65	75	75	215	

□ 2026학년도 안전 ·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목표

안전보건 관리규정 준수	중대재해 ZERO 달성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

경영방침

우리 학교는 전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 근무환경 조성』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적극 이행한다.

1. 안전 · 보건활동을 최우선으로 이행하며, 전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률 ·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구성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3. 안전보건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4.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2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성한기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대구가톨릭대학교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4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5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김태연	053-850-3556, lailai1718@cu.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오종철	053-850-3310, otj7221@cu.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권현기	053-850-3306, hyungi922@cu.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예방 ·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효성)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유스티노)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비고
2026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025-09-30 2026-09-30	1	12,173	28,553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500,000	
	대물	-	50,000	
	교내치료비	2,000	2,000	
	교외치료비	2,000	2,000	
	신입생OT치료비	2,000	2,000	
상해공제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	100,000	
신입생 OT 중 상해공제	상해사망후유장해	200,000	200,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KB재산 종합보험	2025-03-31 2026-03-30	19,681	311,453	19,681	0	0	0	0	효성캠퍼스
2025	한국교육시설 안전공제	2026-01-01 2026-12-31	4,904	26,798	4,904	0	0	0	0	유스티노캠퍼스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재산종합위험	-	304,288,302	KB재산종합보험 (효성캠퍼스)
기계위험	-	143,334	
재산종합위험	-	63,866,296	한국교육시설안전공제 (유스티노캠퍼스)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6	연구실 안전공제	2025-06-01 2026-05-31	1,523	5,670	10,000	1	88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	
장해급여	200,000	-	
요양급여	2,000,000	-	
장의비	10,000	-	
입원급여	50	-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손옥선	053-850-3238, flow@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수석상담원	권정해	053-850-3358, jayu0602@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김혜정	053-850-3356, stella1219@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이승현	053-850-3359, diri@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행정직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행정직	강나현	053-850-3357, nahyeon5711@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박수영	053-850-2576, dlsrnjs@c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장해준	053-850-2577,deepocean@cu.ac.kr	

□ 지원 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스크리닝 실시	▪ 신입생을 대상으로 PAI 및 기초설문을 실시하여 위기 상태를 조기 선별하고 선제적 심리 지원 제공
종합심리검사 실시	▪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심층 진단 및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지역 의료기관 연계	▪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약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
위기 대응망 확충	▪ 학내외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시 보호 체계 가동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주관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5.03.25.	20:00~22:00	2,000명	-
학생,교직원	2025.09.16.	20:00~22:00	2,17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재난 및 소방대피훈련	▪ 화재를 직접 소화하는 훈련 소화기,소화전을 활용한 소화방법 연습 ▪ 방화셔터 작동 시 계단 및 비상시 대피로 활용 설정된 집결지에 집합 실시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교직원	2026.3월	2시간	약 2,000명	-
학생	2026.9월	2시간	약 2,0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소방훈련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 확보 ▪ 피난 동선 및 비상 절차 점검 ▪ 자위소방대 및 직원의 역할 숙지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이한진	053-850-3962, wicked@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강영미	053-850-3501, ymkang@cu.ac.kr	
팀장	외국인학생지원센터	팀장	함종명	053-859-4221, achilles@cu.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내용
신입생 참인재 캠프 멘토 교육	2025. 2. 27.	14:00 ~ 15:00	약300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재난 발생 시 상황 및 대피 교육
전공심화해외체험 안전교육	2025. 5. 21.	17:00 ~ 18:00	약130명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교육
DCU함께걷길 사전 안전교육	2025. 6. 12.	17:30 ~ 18:00	약50명	DCU함께걷길 시행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교육 (온라인)	2025. 3. 1.~ 2026. 2. 28.	온라인	430명	학과·동아리 집단 연수 안전확보를 위한 온라인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시기	교육시간	인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 교육	2026년 2월 중	약30분	약50명
전공심화해외체험 안전 교육	2026년 5월 중	약30분	약130명
DCU함께걷길 사전 안전 교육	2026년 7월 중	약30분	약50명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교육	온라인 교육	약15분	약150명
그 외 교육	연중	미정	미정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대신학원	팀장	송두진	053-660-5110, songd@c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현업종사자	매월 4일	1시간	40명	연 12회 진행
관리감독자	2025년 6월	8시간	6명	연 1회 진행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진행 ▪ 현업종사자 전체 집체교육 진행 (연 2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우리 대학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8시간) ▪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위탁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간담회 진행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비고
현업종사자	매월 4일	1시간	40명	연 12회 진행
관리감독자	2025년 6월	8시간	6명	연 1회 진행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진행 ▪ 현업종사자 전체 집체교육 진행 (연 2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우리 대학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8시간) ▪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위탁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간담회 진행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 시기별, 분야별 교육을 통한 전문화 ▪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미이수자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최지민	053-850-3884, jm76331@cu.ac.kr	
팀장	전산정보팀	팀장	박상수	053-850-2621, dxre@cu.ac.kr	협조부서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찾아가는 연구실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약 1,000명	2,500,000원
정기 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약 4,5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신규 안전교육	▪ 단과대학 별 '찾아가는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정기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찾아가는 연구실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약 1,000명	2,500,000원
정기 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약 4,5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신규 안전교육	▪ 단과대학 별 '찾아가는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정기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보건진료소	팀장	유명숙	053-850-3188, sryoo7@cu.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진료소	팀원	정은진	053-850-3119, jungej@cu.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대책 및 감염병 예방수칙 (비대면 교육)	-	4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수칙 변경에 따른 교육 ▪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교육 등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대책 및 감염병 예방수칙 (비대면 교육)	-	3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수칙 변경에 따른 교육 ▪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교육 등

6.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인권센터	행정직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박수영	053-850-2576, dlsrnjs@cu.ac.kr	
팀원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장해준	053-850-2577,deepocean@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수석상담원	권정해	053-850-3358, jayu0602@cu.ac.kr	협조부서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03.10~12.12	4시간	10,278	2,200,000
교직원	03.10~12.12	4시간	1,637	
고위직	08.14.	2시간	32	527,30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 성인지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 성인지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별도 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온라인 교육	2	13,000	4,675,000
교직원	온라인 교육	1	1,200	
고위직	맞춤형별도교육	1	35	1,450,00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 성인지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 성인지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별도 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

7.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김태연	053-850-3556, lailail718@cu.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오종철	053-850-3310, otj7221@cu.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권현기	053-850-3306, hyungi922@cu.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비상대비업무	1	60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비상대비업무	1	60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8.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이한진	053-850-3962, wicked@cu.ac.kr	
팀장	외국인학생지원센터	팀장	함종명	053-859-4221, achilles@c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미정	미정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 안전 관련 주요 정책, 유관기관 협업 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 (연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화재진압,구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000		응급대응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가스시설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053-603-3000		전기시설관리
승강기(오티스)	1661-6112		E/V관리
승강기(현대)	1577-0603		E/V관리
승강기(미쓰비시)	080-253-2533		E/V관리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850-2699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shinmk@cu.ac.kr	캠퍼스관리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경산경찰서	053-770-0224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30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123		경산지사
경산시청(안전과)	053-810-5150		
경산보건소	053-810-6363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paperlab@cu.ac.kr	건축안전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경산시청	053-810-5383		
경산시 보건소	053-810-6343		
경상북도청	054-880-4576		
교육부	044-203-714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4430		
경산 세명병원	053-819-8500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보건진료소	053-850-3119	jungej@cu.ac.kr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로뎀성폭력상담소	053-853-5276	lodem5276@daum.net	
대구해바라기센터	053-556-8117	dgonestop112@naver.com	
경산경찰서	053-770-0224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3-816-7160	gsmhc@hanmail.net	
대구여성의전화	053-471-6483	dwhotline6484@hanmail.net	
대구인권사무소	053-212-7000	feeler@humanrights.go.kr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shinmk@cu.ac.kr	캠퍼스관리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경산교육지원청	053-810-7564		행정지원과
경산시청	053-810-5150		안전과
대구지방고용노동부	053-667-6360		산재예방지도과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	053-819-2119		재활보상부
경산경찰서	053-770-0224		
경산소방서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경산보건소	053-810-630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4430		
경산 세명병원	053-819-8500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paperlab@cu.ac.kr	건축안전팀장
		shinmk@cu.ac.kr	캠퍼스관리팀장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교육부	044-203-6191		비상안전담당관
국방부	02-748-5769		재난관리지원과
제50보병사단	053-320-0300		
제122보병여단	054-332-2113		
122-2대대	053-856-4091		
하양읍대	053-852-7113		
경산시청(총무팀)	053-810-5641~4		
경산시청(안전과)	053-811-2231		
하양읍사무소	053-804-7354		
경산소방서	053-812-5119		
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경산경찰서	053-770-0329		
하양파출소	053-853-2112		
경산보건소	053-810-6465		
하양보건지소	053-853-3010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shinmk@cu.ac.kr	캠퍼스관리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주관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② 사회 재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우태	053-850-3961, reno11@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이한진	053-850-3962, sbpark@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강영미	053-850-3501, ymkang@cu.ac.kr	
		팀장	외국인학생지원센터	팀장	함종명	053-859-4221, achilles@cu.ac.kr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③ 연구실 사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최지민	053-850-3884, jm76331@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장	보건진료소	팀장	유명숙	053-850-3188, sryoo7@cu.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진료소	팀원	정은진	053-850-3119, jungej@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팀장	외국인학생지원팀	팀장	함종명	053-859-4221, achilles@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4. 범죄	1 일반 범죄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김태연	053-850-3556, lailai1718@c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이한진	053-850-3962, wicked@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2 성범죄	팀원	인권센터	팀원	정은희	053-850-3355, egg30hee@cu.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박수영	053-850-2576, dlsrnjs@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장해준	053-850-2577, deepocean@cu.ac.kr	
		팀장	교무인사팀	팀장	성봉헌	053-850-3012, seongbh@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팀장	직원인사팀	팀장	손석민	053-850-3551, smson@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수석 상담원	권정해	053-850-3358, jayu0602@cu.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1 산업 재해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대신학원	팀장	송두진	053-660-5110, songd@c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2 중대 재해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9806@cu.ac.kr	
		팀장	대신학원	팀장	송두진	053-660-5110, songd@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백승환	053-850-3961 sh100@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이승기	053-859-4061, sglee@cu.ac.kr	
6. 기타	1 비상 사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6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김태연	053-850-3556, lailai1718@cu.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오종철	053-850-3310, otj7221@cu.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권현기	053-850-3306, hyungi922@cu.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 (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1	-	-	-	-	0.2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24	31	36	43	39	27.50
		재산피해(백만원)		0	1	7	1	0	0.5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00
			부상	2	6	31	42	39	4.00
			계	2	6	31	42	39	24.0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20	952	0	0	0	194.4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1	1	3	1	-	1.2
		피해자 수		1	4	3	2	-	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시설물유지보수사업	20	20	20	60	
		계	20	20	20	60	
	② 사회재난	건물유지보수사업	300	300	720	1,320	
		계	300	300	720	1,32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추후 예산 배정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교육시설안전인증	63	80	-	143	인증 완료
		교내 각관 방수 공사	40	50	110	200	
		무석면캠퍼스조성사업	71	80	91	242	
		계	174	210	201	585	
	③ 연구실사고	안전관리사업	65	75	75	215	
		계	65	75	75	215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소모품 구입)	2.1	0.3	0.5	2.9	
		계	2.1	0.3	0.5	2.9	
4. 범죄	① 일반범죄	관제용역	86	92	76	30	
		CCTV설치(보수)	7	11	12	30	
		계	93	103	88	60	
	②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5	5	4.67	14.67	
		전문가 자문 및 활용	0.5	1	1	2.5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0.6	1.45	1.45	3.5	
		계	6.1	7.45	7.45	19.2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안전관리사업	65	75	75	215	
		계	65	75	75	215	
	② 중대재해	안전관리사업	65	75	75	215	
		계	65	75	75	215	
6. 기타	① 비상사태	추후 예산 배정					